

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위험	높은 위험	다소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안전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골든브릿지블루오션3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브릿지블루오션3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골든브릿지블루오션3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gbam.co.kr)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9년 08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년 09월 16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1조주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360-9500, www.g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요약정보 >

(작성기준일 : 2019.08.20)

골든브릿지블루오션 3 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펀드 코드: 54230)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40%이상 을 국내 우량 채권인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에 투자하며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골든브릿지블루오션3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투자회사를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우량 채권인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A-이상) 회사 자산총액의 40%이상 투자 하여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								
분류	투자회사,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	1.0	0.7	-	195	395	602	1,034	2,236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2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 이(연평균 수익률, 단 위 %)	기간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8.21 ~ 19.08.20	17.08.21 ~ 19.08.20	16.08.21 ~ 19.08.20	14.08.21 ~ 19.08.20	06.01.25 ~ 19.08.20			
	골든브릿지블루오션3호 회사(채권혼합)	2006.01.2	-8.53	-3.78	-2.84	-1.57	5.09			
	비교지수	5	-0.82	-0.10	1.30	1.49	3.62			
수익률변동성(%)		5.06	4.31	3.63	4.08	4.08				
<p>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p> <p>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 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p> <p>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 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 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운용전문인 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 단위:%)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운용경 력년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대중	1974	팀장	24	988	-	-	1.59	1.72	14년
<p>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 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 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 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 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 입니다.</p>										
투자자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 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 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p>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신탁재산을 주식에 30% 이하의 수준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회사는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시(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 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 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5시(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 지급 • 오후5시(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50% 18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20%		
기준가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gbam.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 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 자	주식회사골든브릿지자산운용 [대표전화: 02-360-9500/ 인터넷 홈페이지:www.gbam.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1조주	
효력발생일	2019년 09월 16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존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g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 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4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gb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gba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gbam.co.kr)

투자설명서 상세목차

제 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사항

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용어풀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골든브릿지블루오션3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5423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채권혼합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중도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계속 모집이 가능)

마. 특수형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붙임】의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조주

주 1)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 집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모집(판매)은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며 판매회사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www.gbam.c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골든브릿지블루오션3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5423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05년 12월 08일	투자회사 최초설립
2005년 12월 27일	변경등록 (환매수수료 변경)
2006년 01월 25일	투자회사 최초설정
2006년 01월 25일	변경등록 (집합투자업자보수등 변경)
2009년 04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골든브릿지블루오션채권혼합3호증권투자회사에서 현 명칭으로 변경
2011년 11월 07일	- 기준일 변경 및 정기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 투자대상자산중 사채권 및 어음 투자가능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을 위한 정관 변경 및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 및 운용실적 등 관련 최근 수치로 갱신
2012년 07월 31일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 편입비율 변경에 따른 정정 - 기준일 변경 및 정기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2013년 11월 27일	- 서식 개정 - 기준일 변경 및 정기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 감독이사 변경 - 문구정정 및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5년 05월 15일	- 운용전문인력 변경 - 기준일 변경 및 정기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2016년 07월 04일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8년 02월 27일	기준일 변경 및 정기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2018년 08월 27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홍창표 실장 -> 김대중 팀장)
2018년 12월 27일	기준일 변경 및 정기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2019년 09월 16일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투자회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회사로 별도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투자회사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자가 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법령 또는 정관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 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 될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 5 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5층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2019. 08. 20. 기준]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 단위:%)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 모(억 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대중	1974	팀장	24	988	-	-	1.59	1.72	*운용경력:14년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주식운용 팀 팀장(2018.08~현재) -세븐브릿지인베스트먼트 자금 운용실 상무(2012.08~2013.07) -KTB자산운용 주식운용팀 차장 (2010.08~2012.07)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 문 팀장(2006.07~2010.05)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주 1) 이 투자회사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3)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 원)
김대중	8	443

(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홍창표	2015.02.09 – 2018.08.26
김대중	2018.08.27 ~ 현재

주 1) 2019년 08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3)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 1)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부책임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 1) 2019년 08월 기준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 투자회사, 추가형, 개방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A-이상급)에 자산총액의 40%이상을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공모주, 실권주 등 주식에 30%이하를, 기타 단기대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① 채권	40%이상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②	주식	3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100%이하	거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⑥	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⑦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30%이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다만, 주식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위 ②의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증권의 대여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것
⑨	증권의 차입	회사자산총액의 20%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것
⑩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⑪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채권총액의 50%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1호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⑫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⑬	위 ②의 주식에의 투자와 위 ⑩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계액은 위 ②의 주식 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

주1)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적용예외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④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회사 성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
- 2)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
-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4) 회사자산인 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④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적용예외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외의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⑤~⑪ 및 아래 “나. 투자제한”의 사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투자, 계열사발행증권취득, 후순위채권 제한사항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투자제한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p>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OECD 국가의 국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등 - 자산총액의 20%까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시가총액비중 까지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이 투자회사 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채권투자 전략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인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회사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하여**, 적정 펀드 듀레이션^(*)에 의한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기업신용도 및 회사채 Spread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그룹별로 분류, 점수화하여 회사채 투자의 비중을 결정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신용분석가가 외부신용평가기관 자료, 각종 재무자료, 기업방문, 업종분석 등을 바탕으로 개별 회사채 종목에 대한 상세한 신용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종목을 결정합니다.

* 듀레이션 : 채무증권의 평균수명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채무증권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간의 가중평균으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가중합니다. 듀레이션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무증권가격의 변동률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2) 주식투자 전략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에 회사 자산총액의 30%이하를 투자하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분석사의 합리적인 분석을 통한 종목선정 및 주가예상으로 추가적인이익 획득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펀드설정 초기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회사는 투자되는 투자대상의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신탁재산을 주식에 30% 이하의 수준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회사는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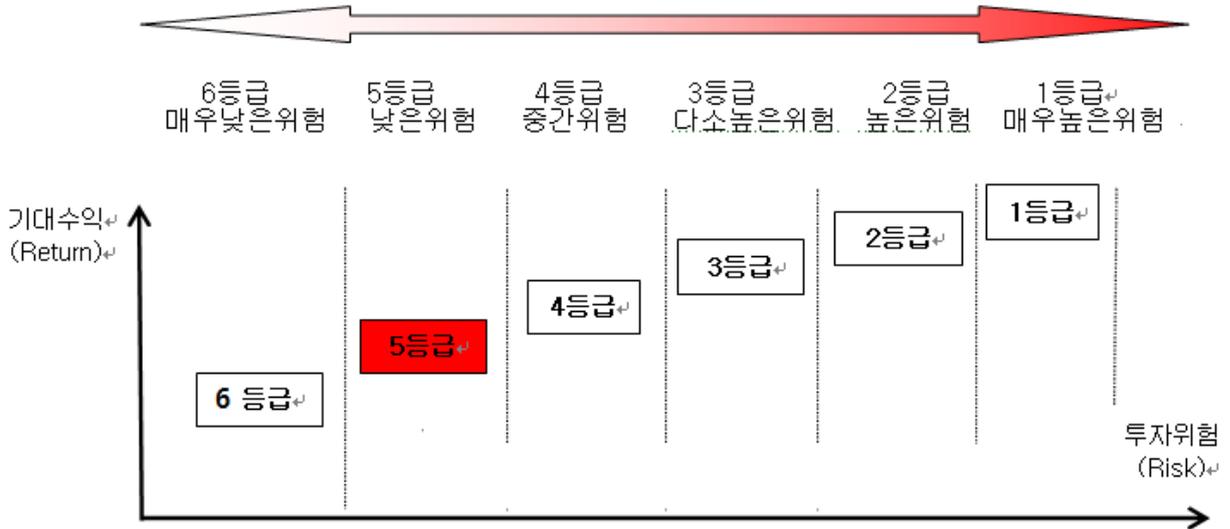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떤 관련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회사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 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환매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해산위험	투자회사는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주주총회의 결의/합병/파산/법원의 명령 또는/판결/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회사는 주로 채권에 자산총액의 40%이상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상장주식, 공모주, 실권주 등 주식에 30%이하를 투자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이 있으며, 이자율이 상승하여 채권가격이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이 큰 주식에도 일부 투자하므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낮은위험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은 3.1057%로서 아래 위험등급 기준표상 5등급인 표준편차 5%이하입니다. 그러나 향후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이 유동적으로 변함에 따라 추후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 주)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예시)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 1) 투자회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2)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투자회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2. 편입비율 등은 정관, 투자설명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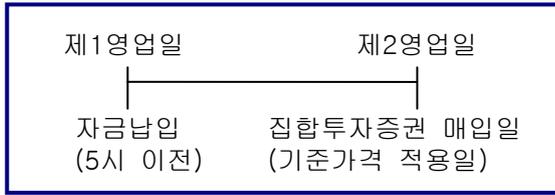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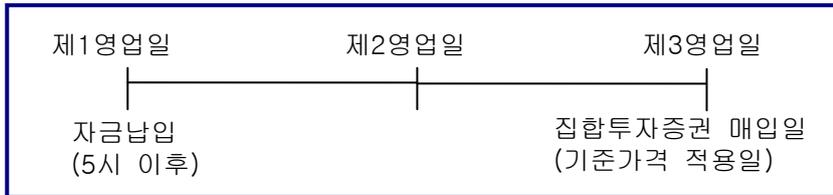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주식의 기준가격 적용



-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주주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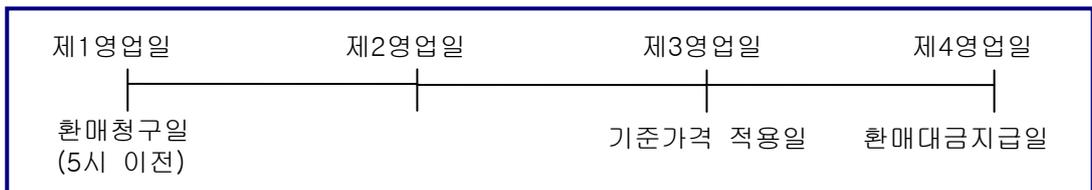
나. 환매

(1) 투자회사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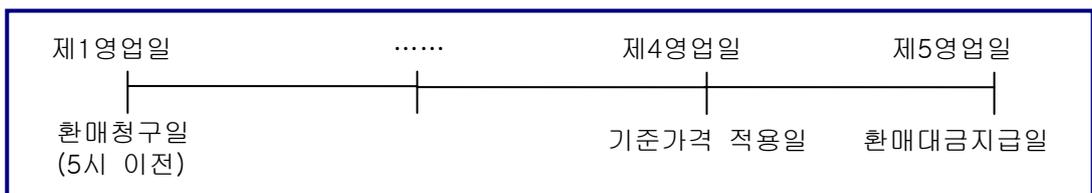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주주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회사는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회사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 (연간,%)	비고 (부담시기)
환매수수료 (보유기간 이익금 기준 징수에 따라)	90일 미만	이익금의 50%	환매시
	180일 미만	이익금의 20%	

(4) 매입 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정정)

이 투자회사 주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주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환매연기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1) 투자회사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주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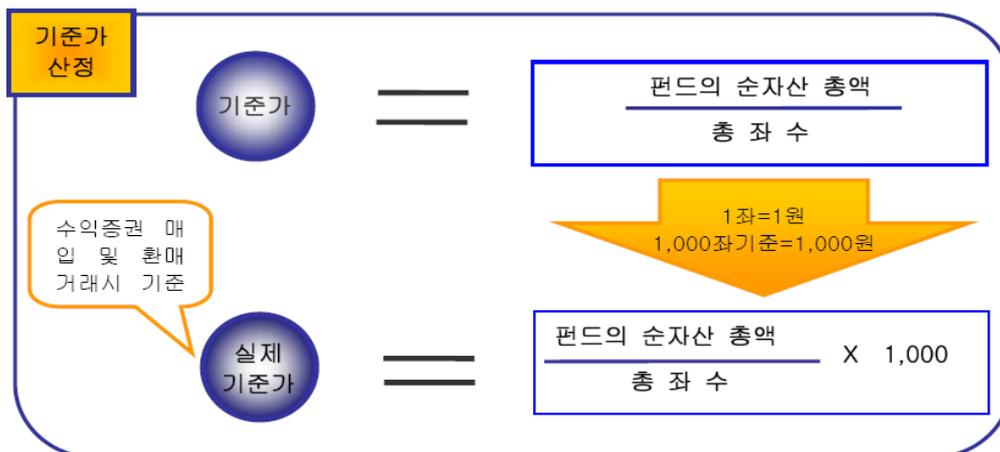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주주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회사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gbam.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주식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없음	전환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2400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연 0.7000	
신탁업자보수	연 0.03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00	
총보수	연 1.0000	-
동종유형총보수	-	-
기타 비용	연 0.8982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연 1.8982	-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연 1.8982	-
증권 거래비용	연 0.0934	사유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회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4) '동종유형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공시하는동종유형집합투자기구전체의평균총보수비용을의미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1 년 후	2 년 후	3 년 후	5 년 후	10 년 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5	395	602	1,034	2,236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배분

주주는 투자회사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주주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또한 투자회사존속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회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회사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주주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회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회사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각 결산기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공모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아래의 ①~③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로서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0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① 집합투자증권을 발행 할 것.
- ②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 ③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주주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주주는 투자회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계약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회사주식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주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주주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주주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는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표기준가격 :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gbam.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 홈페이지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혁	소유 주식수	비고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	220-81-58333	1999. 02. 09. 회사 설립 1999. 03. 27. 투자자문업 등록 1999. 08. 31. 투자일임업 등록 1999. 10. 21. 자산운용업 등록 등록	없음	결격사유 없음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직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소유 주식수	비 고
감독이사	김병준	*****_*****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삼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現) 다산회계법인 재직중	해당 없음	
	윤형근	*****_*****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현우경영컨설팅 대표 現) 루씨드파트너스 이사	해당 없음	

다. 이사의 보수지급기준

- (1)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정한 설립 후 최초의 법인이사, 감독이사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법인이사 : 지급하지 아니함
 - 감독이사 : 월 10만원
- (2) 청산인의 보수 : 각 월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회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3 기(2017.12.08 - 2018.12.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2 기(2016.12.08 - 2017.12.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1 기(2015.12.08 - 2016.12.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2018.12.07)	(2017.12.07)	(2016.12.07)
운용자산	100,670,837	355,030,165	376,311,617
증권	58,673,193	256,282,477	275,571,15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1,997,644	98,747,688	100,740,45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07,045	2,035,996	6,132,127
자산총계	100,777,882	357,066,161	382,443,74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564,197	3,157,064	3,264,054
부채총계	2,564,197	3,157,064	3,264,054
원본	101,173,404	346,502,941	374,866,863
수익조정금	2,410,647	-82,777	-116,482
이익잉여금	-5,370,366	7,488,933	4,429,309
자본총계	98,213,685	353,909,097	379,179,690

[단위: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2017.12.08 - 2018.12.07)	(2016.12.08 - 2017.12.07)	(2015.12.08 - 2016.12.07)
운용수익	167,331	14,033,941	11,413,497
이자수익	4,860,371	4,655,961	6,302,728
배당수익	316,365	217,662	956,822
매매/평가차익(손)	-5,009,405	9,160,318	4,153,947
기타수익	0	0	2,252
운용비용	2,590,363	3,556,366	4,256,459
관련회사 보수	2,590,363	3,556,366	4,256,45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947,334	2,988,642	2,729,981
당기순이익	-5,370,366	7,488,933	4,429,309
매매회전율	192.83	114.84	322.11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과 목	제13기(2018.12.07)		제12기(2017.12.07)		제11기(2016.12.07)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41,997,644		98,747,688		100,740,459
1. 현금및현금성자산	41,966,839		98,747,688		100,740,459	
2. 예치금						
3. 증거금	30,805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58,673,193		256,282,477		275,571,158
1. 지분증권	8,682,160		56,326,943		25,141,605	
2. 채무증권	49,991,033		199,955,534		250,429,553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07,045		2,035,996		6,132,127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825,494		4,600,131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07,045		1,210,502		1,531,996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00,777,882		357,066,161		382,443,744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564,197		3,157,064		3,264,054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30,805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246,722		870,394		977,38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2,286,670		2,286,670		2,286,670	
부 채 총 계		2,564,197		3,157,064		3,264,054
자 본						
1. 원 본	101,173,404		346,502,941		374,866,863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959,719		7,406,156		4,312,827	
(발행좌수 당기: 101,173,404 좌		이익잉여금	-5,370,366		7,488,933	4,429,309
전기: 346,502,941 좌		수익조정금	2,410,647		-82,777	-116,482
전전기: 374,866,863 좌)						
(기준가격 당기: 970.75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98,213,685		353,909,097		379,179,69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00,777,882		357,066,161		382,443,744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13기(2017.12.08-2018.12.07)		제12기(2016.12.08-2017.12.07)		제11기(2015.12.08-2016.12.07)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5,176,736		4,873,623		7,261,802
1. 이 자 수 익	4,860,371		4,655,961		6,302,728	
2. 배당금수익	316,365		217,662		956,822	
3. 수수료수익					2,252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9,896,358		13,003,849		19,853,392
1. 지분증권매매차익	9,611,402		12,991,674		19,830,902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284,956		1,225		22,490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0,95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4,905,763		3,843,531		15,699,445
1. 지분증권매매차손	12,663,381		3,010,473		13,438,532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2,242,382		833,058		2,260,913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5,537,697		6,545,008		6,986,440
1. 운용수수료	640,701		879,642		1,052,880	
2. 판매수수료	1,869,688		2,566,892		3,072,068	
3. 수탁수수료	79,974		109,832		131,511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947,334		2,988,642		2,729,981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5,370,366		7,488,933		4,429,309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53080808		0.021612899		0.01181568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억주,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12.08 - 2018.12.07	3	3	0	0	3	3	1	1
2016.12.08 - 2017.12.07	4	4	0	0	0	0	3	4
2015.12.08 - 2016.12.07	7	7	3	3	6	6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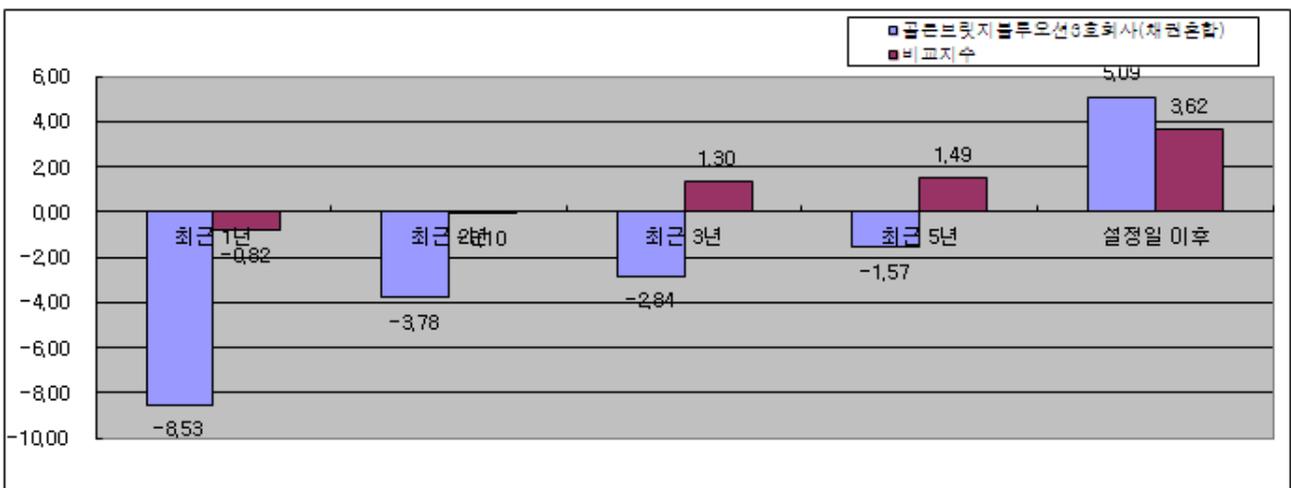
(주1) 2016.12.08 - 2017.12.07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406,156좌/7,406,156원

(주2) 2015.12.08 - 2016.12.07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312,826좌/4,312,826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회사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

기간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8.21 ~ 19.08.20	17.08.21 ~ 19.08.20	16.08.21 ~ 19.08.20	14.08.21 ~ 19.08.20	06.01.25 ~ 19.08.20
골든브릿지블루옵션 3 호회사 (채권혼합)	2006.01.25	-8.53	-3.78	-2.84	-1.57	5.09
비교지수		-0.82	-0.10	1.30	1.49	3.62
수익률변동성(%)		5.06	4.31	3.63	4.08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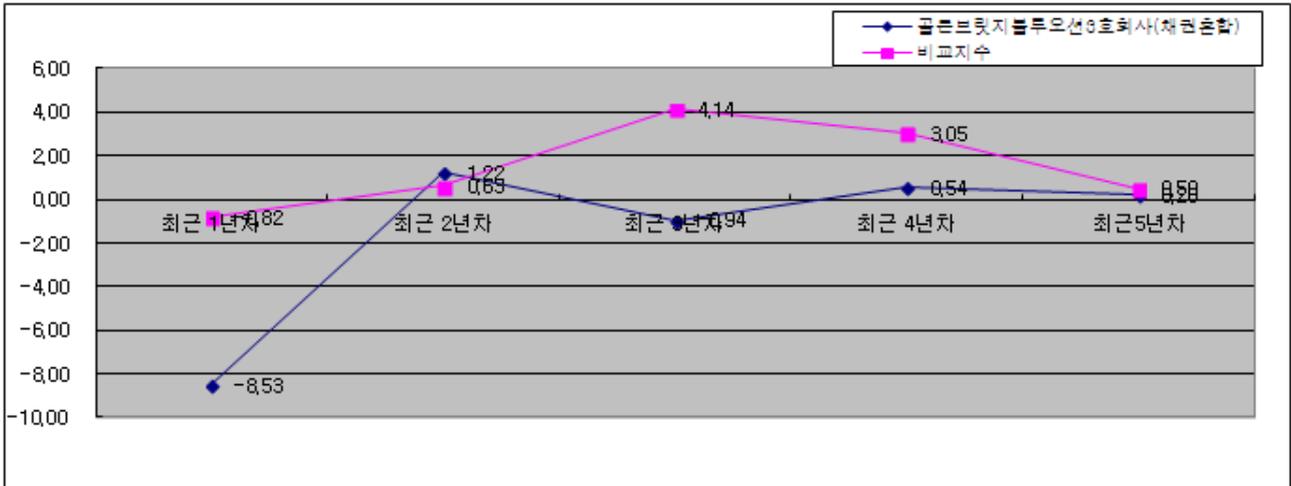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 %]

기간	최초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8.08.21 ~ 19.08.20	17.08.21 ~ 18.08.20	16.08.21 ~ 17.08.20	15.08.21 ~ 16.08.20	14.08.21 ~ 15.08.20
골든브릿지블루오션 3 호회사 (채권혼합)	2006.01.25	-8.53	1.22	-0.94	0.54	0.20
비교지수		-0.82	0.63	4.14	3.05	0.50
수익률변동성(%)		5.06	3.37	1.55	3.73	4.79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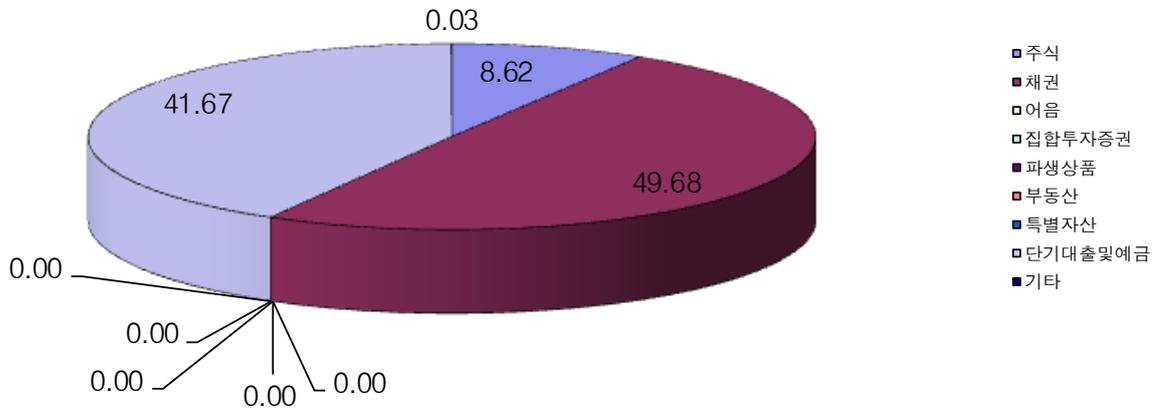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회사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8.12.07 기준, 단위: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1	0	0	0	0	0	0	0	0	0	1
	(8.62)	(49.6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1.67)	(0.03)	(100.00)
합계	0	1	0	0	0	0	0	0	0	0	0	1
	(8.62)	(49.6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1.67)	(0.03)	(100.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2018.12.07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채권종류						합 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화채	회사채	
금액/비중	0	0	0	0	1	0	1
	(0.00)	(0.00)	(0.00)	(0.00)	(100.00)	(0.00)	(100.00)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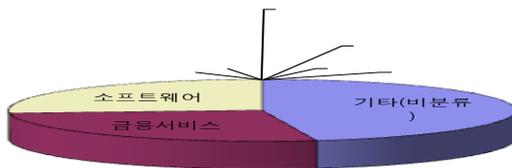
[2018.12.07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신용평가등급									합 계
	RF	AAA	AA- 이상	A- 이상	BBB- 이상	BB-이상	B- 이상	C,CC,CCC	무등급	
금액/비중	1	0	0	0	0	0	0	0	0	1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 해당없음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2018.12.07 현재 / 단위 : 억원,%]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기타(비분류)	0	46.57
2	금융서비스	0	26.92
3	소프트웨어	0	26.51
	합계	0	100.00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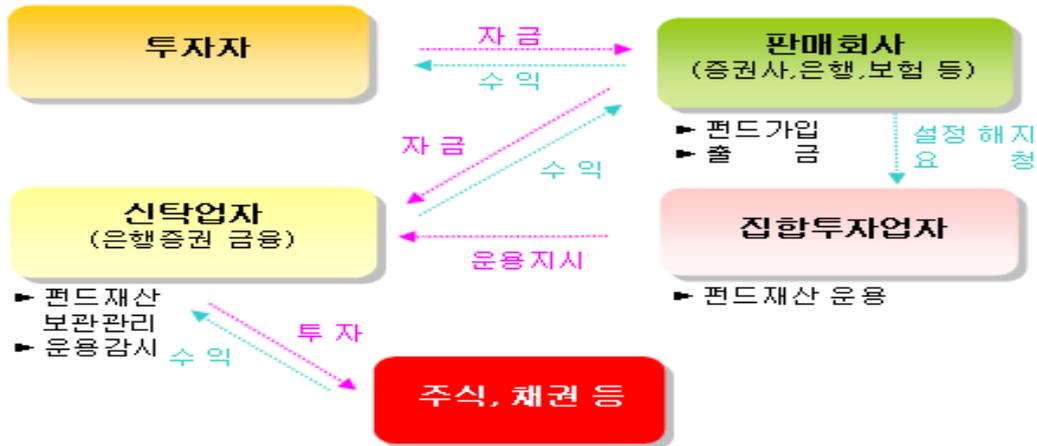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 해당없음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해당없음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해당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5층 (연락처 : 02-360-9500)
회 사 연 혁	1999년 02월 회사 설립 1999년 03월 투자자문업 등록 1999년 08월 투자일임업 등록 1999년 10월 자산운용업 등록 2004년 05월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년 05월 수탁고 1조원 돌파 2016년 03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7년 04월 티에스오비로 최대주주 변경
자 본 금	100 억 원
주 요 주 주 현 황	티에스오비 (55.25%), 골든브릿지 (37.3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회사의 설정·해지
2.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회사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20기 (2017.12.31.)	제19기 (2016.12.31.)	계정과목	제20기 (2017.01.01.~ 2017.12.31.)	제19기 (2016.01.01.~ 2016.12.31.)
현금및예치금	6,391	5,800	영업수익	5,775	4,239
매도가능금융자산	2,819	2,065			
종속기업투자주식	0	0			
대출채권및수취채권	1,131	595	영업비용	4,530	3,841
유형자산	29	35			
기타자산	1,840	3,093			
자산총계	12,210	11,588	영업이익	1,245	398
퇴직급여부채	0	0	영업외수익	23	43
기타부채	666	565	영업외비용	274	1
부채총계	666	565	법인세차감전	993	439
자본금	10,000	10,000	법인세비용	208	86
자본잉여금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0	66			
이익잉여금	1,412	957	당기순이익	850	327
자본총계	11,543	11,023			

라. 운용자산 규모

[2018.12.10 현재 / 단위: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부동 산파생	특별자산 및특별 자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 자산파생	단기 금융	총 계
	주식 형	채권 형	혼합 형	계 약 형	재간접 형	파생 형	기 타					
수탁고	762	4,434	1,997	-	1,287	534	-	1,035	4,107	267	-	14,42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연락처 : 1588-1111, www.kebhana.com)
회 사 연 혁	1971.06 한국투자금융(주)설립 1991.07 은행으로 전환 2000.12 총수신 40조 달성 2001.12 국가고객만족지수 1위 선정 2005.05 대한투자증권 인수 2006.01 제15회 다산금융상, 시중은행부문 금상수상 2006.02 06년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상 수상 2006.12 제11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대통령표창 수상 2007.10 2007 한국의 경영대상 경영혁신부문 종합대상수상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주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정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5. 투자회사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22 층 (연락처 : 02-2168-0400, www.shinhanaitas.com)
회 사 연 혁	- 2000.06.15 회사 설립 - 2000.06.28 한국투자회사운용 수익증권 사무수탁대행계약 체결 - 2001.09.16 자체사옥 입주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KIS 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02-399-3350, www.koreaa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회사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회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등

(1) 주주총회의 구성

- 이 투자회사에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둡니다.
-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주주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소집을 요청하여 법인회사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의한 요청이 있을 후 1월 이내에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투자자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 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계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주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주주총회

- ① 투자회사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상기 (1)-② 후단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상기 2)-①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연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 2)-① 및 ②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은 "발행된 주식 총수의8분의1 이상"으로 보고, "주식의 총수의5분의1 이상"은 "주식의 총수의10분의1 이상"으로 봅니다.

(3) 주주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회사 보수 또는 그밖의 수수료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투자회사 존속기간의 변경(투자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양도/ 환매금지투자회사로의 변경/ 주된 투자회사자산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회사에게 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95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투자회사 존속기간의 변경 또는 법 제 204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주주총회 전에 해당 투자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주가 그 주주 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2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회사를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회사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지급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회사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회사재산인 자산으로 주주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주주는 투자회사등(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주주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주주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투자회사는 정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주주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 포함)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정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1) 해산

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그 사실을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투자회사의 피흡수 합병 / 투자회사의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회사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주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회사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투자회사의 사업년도 종료일
- 2)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회사의 해산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회사의 자산·부채 및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정관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회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주주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투자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7.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gba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정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정관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주주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계			
골든브릿지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주식	53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투자증권 거래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지분증권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격월 주식운용역, 스트래티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중개회사 지정
채무증권등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도모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분기 채권운용역, 스트래티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2)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주식관련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격월 주식운용역, 스트래티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기여도 평가 점수에 따라 중개회사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채권관련등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도모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분기 채권운용역, 스트래티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증권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혹은 집합투자기구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고 불립니다.
신탁업자	투자회사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회사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계약(또는 계약)에 의거 펀드의 성과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를 성과보수가 없는 펀드와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주주총회	정관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주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주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

	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교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회사(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고객이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수익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